

< 주요 변경 대비표 >

1. 변경대상 펀드명(변경후) 및 변경 문건:

No.	펀드명	구분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간이설명서
1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	○	○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8년 5월 2일(수)

3. 주요 변경사항:

[1] 신탁계약서

-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등
- 수탁보수 인하: 연 0.06% → 연 0.04%
-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 I 클래스 정의 수정 및 V(변액보험) 클래스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 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종류 I 수익증권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삭제>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1.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삭제>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이 하생략-	이 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현행과동일-
제18조(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1.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1.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3)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9조(보수)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제39조(보수)	11.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삭제>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 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C1~C5, C-e, F, I, V(변액보험), W, S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종류 A, A-e, C-CP(퇴직연금), C-CPe(퇴직연금) 수익증권 - 없음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⑤항 (내용 생략)</p>	<p>③ 삭제 ③, ④항 (조항 변경, 내용은 현행과 동일)</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p>1. <생략> <신설> 2. <이하 생략></p>	<p>1. <생략>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3. <현행과 동일></p>
부칙	<신설>	<p>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p>

[2] 투자설명서

-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참조지수 변경, 환헤지 방법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 수탁보수 인하: 연 0.06% -> 연 0.04%
-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 I 클래스 정의 수정 및 V(변액보험) 클래스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2부. 4. 가.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나. 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 개요		<삭제>
제2부. 5. 다. 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p>종류 I 수익증권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p> <p>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u>자본시장법 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u></p>	<p>종류 I 수익증권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p> <p><삭제></p>
제2부. 6. 다. 모자형 구조	<p>① 투자대상 <u>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u></p> <p>② 투자전략 <u>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중에서 지속적인 초과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가치를 증대시킬수 있는 종목,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 우월한 주주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슈로더의 내부 리서치를 기초로 상향식 기업분석을 통하여 종목을 선정합니다. 또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한 종목 선정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전략을 추구합니다.</u></p>	<p>① 투자대상 <u>모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u></p> <p>② 투자전략 <u>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라틴아메리카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라틴아메리카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하며, 통상 50~70 개 기업에 투자합니다.</u></p>
제2부. 6. 라. 재간접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된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Latin American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현행과 동일>
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p><신설></p> <p>1. 외국주식</p> <p>2. 채권</p>	<p>1)집합투자증권 : 40%이하 -> 60%이상 <u>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u></p> <p>2)외국 주식 : 60%이상 -> 40%이하 <u>가. 라틴아메리카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u></p> <p>3. 채권</p>

	<p><u>3. 자산유동화증권</u></p> <p><u>4. 어음</u></p> <p><u>5. 금리스왑거래</u></p> <p><u>6. 파생상품</u></p> <p><u>7.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u></p> <p><u>8. 증권대여</u></p> <p><u>9. 환매조건부매도</u></p> <p><u>10. 증권 차입</u></p> <p><u>11. 파생결합증권</u></p> <p><u>12. 유동성자산</u></p>	<p><삭제></p> <p><삭제></p> <p><u>4. 금리스왑거래</u></p> <p><u>5.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u></p> <p><u>6. 증권대여</u></p> <p><삭제></p> <p><u>7.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u></p> <p><u>8. 파생결합증권</u></p> <p><u>9. 유동성자산</u></p> <p><u>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u></p>
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4) 및 8) 내지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p> <p>1. <u>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u></p> <p>2.~4. <생략></p> <p>5. <u>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4) 및 8) 내지 9)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u></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5) 및 8) 내지 9)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현행과 동일></p> <p>1. <u>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 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 발생한 날부터 1월간</u></p> <p>2.~4. <현행과 동일></p> <p>5. <u>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5) 및 8) 내지 9)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u></p>
제2부. 8. 나. 투자제한	<p><신설></p>	<p>집합투자증권 등(1)</p> <p>-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p> <p>가.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p>

		<p>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호 나목의 집합투자 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제2부. 8. 나. 투자제한(계속)	<신설>	<p>집합투자증권 등(2)</p> <p>-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제2부. 8. 나.(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계속)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4 호 내지 제 6 호, 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5. <생략> 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7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 및 제 19 조제 10 호 내지 14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1~5. <현행과 동일></p>

	<p>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19 조제 10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제2부. 9. 가. (1) 운용전략	<p>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통해 투자됩니다.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럼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
제2부. 9. 가. (2)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p>(1)운용전략 <u>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럼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u> <u>- 주요 운용전략</u> <u>▪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럼비아 등 세계 최대의 원자재 공급지역인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u> <u>▪ 상기의 지역의 국가에 속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상향식(Bottom-up) 기업분석 방식에 의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합니다.</u> <u>▪ 다양한 스타일과 섹터에의 투자를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특정 국가, 섹터 및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는 운용 방식을 추구합니다.</u> <u>▪ 독자적인 리서치와 지속적인 사후 밸류에이션 모니터링을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재구성을 실시합니다.</u> <u>(③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생략</u> <u>④ 참조지수 (모투자신탁 기준)</u>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p>	<p>(1)운용전략 <u>이 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u>①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u> <u>※ 상세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조</u> <u>②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u> <u>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라틴아메리카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라틴아메리카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하며, 통상 50~70 개 기업에 투자합니다.</u> <u>③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현행과 동일</u> <u>④ 참조지수</u>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95% + Call 지수 5%</p>
제2부. 9. 가. (4) 위험관리	<p>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 Portfolio Risk and Investment Strategy Manager "PRISM")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 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② 환해지 방법 모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미국 달러 및 유로 표시 자산만 해당)의 평가액에</p>	<p>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② 환해지 방법 모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p>

	<p>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및 원/유로 선물환 등을 통해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하여는 원-달러 해지를 수행하고 유로 자산에 대하여는 원-유로 해지를 수행 하지만, 기타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하여는 해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지 않는 통화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중략></p> <p>또한, 해지 대상금액과 해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해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해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래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p>	<p>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p>
제2부. 9. 나. 수익구조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폐루, 아르헨티나 및 콜럼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서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Schroder ISF Latin American'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p>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신설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p>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2부. 11. 나.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환매수수료 : 없음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p>종류 I 수익증권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p> <p>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u>자본시장법 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u></p>	<p>종류 I 수익증권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 <u><삭제></u></p>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직접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천만원 수수료 및 보수 비용 예시표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6%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제2부. 14. 나.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신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이 투자신탁 단계에 한정되며, 투자신탁이 자산으로 편입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3부. 3.가.&나.	주 1) 참조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주 1) 참조지수: 2018년 5월 2일이후부터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95% + Call 지수 5% [변경전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제4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삭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부. 3. 나. (2) 수시공시	① <생략> <신설> <이하 생략>	① <생략> ② <u>피 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u> <u><현행과 동일></u>

[3] 간이투자설명서

- 모펀드 펀드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참조지수 변경, 환헤지 방법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 수탁보수 인하: 연 0.06% → 연 0.04%
- 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u>신탁보수: 연 0.06%</u> <u>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u>	<u>신탁보수: 연 0.04%</u> <u>환매수수료: 없음</u>
II. 1.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자산의 대부분을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대부분을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투자합니다.
II.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에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세계 최대의 원자재 공급지역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역 국가 주식에 주로 투자 • 상기의 지역의 국가에 속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상향식(Bottom-up) 기업분석 방식에 의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 다양한 스타일과 섹터에의 투자를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특정 국가, 섹터 및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는 운용 방식을 추구 • 독자적인 리서치와 지속적인 사후 밸류에이션 모니터링을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재구성에 노력 <u><모투자신탁의 운용프로세스> <생략></u>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참조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u>	<u>참조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95% + Call 지수 5%</u>

II.3. 운용전문인력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운용인력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II.4. 투자실적추이	주 1) 참조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주 1) 참조지수: 2018년 5월 2일이후부터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95% + Call 지수 5% [변경전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II.7. 투자위험관리	<p>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u>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미국 달러 및 유로 표시 자산만 해당)의 평가액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및 원/유로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u> 이 경우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하여는 원-달러 헤지를 수행하고 유로 자산에 대하여는 원-유로 헤지를 수행하지만, 기타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하여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헤지가 되지 않는 통화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u>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u>.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p>